



“시대의 소망, 기독교학교”

##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수신      학교법인 이사장 및 학교장  
 참조      학교법인 사무처장  
 첨부      붙임 1,3 각 1부  
 제목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의견서 제출안내

은총가운데 귀 법인과 학교의 무궁발전을 기원드립니다.

행정안전부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하여 분리과세 해 오던 방법을 세율이 높은 합산가산세로 개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9년 4월 19일에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학교법인측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수백억원 증액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붙임1. 참조)

이에 사학법인연합회, 사학관련 단체 등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강력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학교법인에서도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귀 법인에서도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3.참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파일 다운로드가능합니다.)

**제출시한 : 2019년 5월 29일 이전**

**제출방법 : Fax. 044-204-8969, 이메일. nicesungki@korea.kr**

**우편.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17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비고 :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검토의견서(붙임2)는 본 연합회 홈페이지 acsk.org <공지사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이사장 김철경 (직인생략)**

담당자      김서영

사무총장      김정섭

이사장      김철경

시행 한기연 제19-19호(2019.05.22)

접수

우 03129      서울 종로구 대학로 19 한국기독교교회관 1007호      / <http://acsk.org>

전화 (02)3674-4431      전송 (02)3674-4432      /E-mail : [acsk52@hanmail.net](mailto:acsk52@hanmail.net)

<붙임 1>

##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폐지에 따른 세액 증가 예상 및 세율 현황

### 1. 대학법인 수익용기본재산 토지분

(단위 : 천원)

학교	1995년12월31일 이전 취득 토지			분리과세 재산세 (추정)	분리과세 폐지 재산세 (추정)	재산세 증가액	종합부 동산세 (추정)	관련세액 증가금액	수익용기 본재산수 입(매출)	수입 대비 증가 세액 비율
	건수	면적 (㎡)	공시지가							
대학	5,506	180,238,113	3,265,646,814	5,486,287	10,972,573	5,486,286	26,125,175	31,611,461	304,400,096	10%
전문	1,275	14,250,819	406,825,653	683,467	1,366,934	683,467	3,254,605	3,938,072	24,756,899	16%
원격	80	2,393,661	35,663,901	59,915	119,831	59,916	285,311	345,227	644,965	54%
합계	6,861	196,882,593	3,708,136,368	6,229,669	12,459,338	6,229,669	29,665,091	35,894,760	329,801,960	11%

- ※ 1. 분리과세 폐지 재산세 산출 적용 세율 1000분의 4 및 지방교육세 포함  
종합합산의 경우 5%구간, 별도합산의 경우 3~4% 구간에 속할 확률이 높음
- ※ 2. 종합부동산세 산출 적용 세율 누진율 고려 !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종합합산 45억원 이하 세율 1.5% 구간, 별도합산일 경우 0.6% 세율 구간에 속할 확률이 높음

### 2. 지방세 세율

세목	과제구분	세 율
재산세	분리과세	1000분의 2
	종합합산	5천만원 이하 : 1000분의 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별도합산	2억원 이하 :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00분의 4
	도시지역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4
지방교육세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 3. 종합부동산 세율

주 택			종합합산			별도합산		
과세표준	세율 (%)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	누진공제
6억이하	0.5	-	15억이하	0.75	-	200억이하	0.5	-
12억이하	0.75	150만원	45억이하	1.5	1,125만원	400억이하	0.6	2,000만원
50억이하	1.0	450만원	45억초과	2.0	3,375만원	400억초과	0.7	6,000만원
94억이하	1.5	2,950만원						
94억초과	2.0	7,660만원						

<붙임 3>

**제목: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의견서 제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

참조: 지방세운영과장

발신: 학교법인 \*\*\*\*\*이사장

<내용>

1.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행정안전부공고 2019-247호(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관련입니다.
3. 위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1호 개정에 관한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개정(안)	수정(안)	사유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⑦(현행과 같음) ⑧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삭제)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⑦(현행과 같음) ⑧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u>1.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현행유지)</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비영리법인을 분리과세하는 조항은 199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행되어 왔음. 약 25년 동안 존재했던 조항을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합산과세 한다고 하였으나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늘어날 수가 없음. 실제로 학교법인에서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늘어날 수가 없음에도 늘어났다고 하여 삭제하는 것은 불합리함.</li> <li>○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1호의 9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의 지방세 분리과세가 계속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본 법인들은 다양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고,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고유목적사업에 투자(교육기관에 투자)하</li> </ul>

여 국가에 이바지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왔음.

- 재산세 분리과세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분리과세를 하여왔음.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해당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하여 공익성의 고취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음.
-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취지는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보유계층에 대한 높은 금액의 세금 징수를 통해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를 노리기 위함으로, 본 법안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시세차익을 위함이 아닌 수익창출을 통한 교육기관 투자에 그 목적이 있음. 종합부동산세 도입취지에 맞지 않음.
-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데는 고유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지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995년 12월 31일 이전 보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해 **종합합산, 별도합산과세를 적용하여 세금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고유목적사업 발전을 저해함**
-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개정취지, 종합부동산세

도입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호 모순되며 그 동안 교육기관인 학교법인 국가에 공헌한 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향후 세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모든 재원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재정확보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짐.

- 지방세법이 개정된다면 인재양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학기관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학교법인은 교육기관에 진출할 자금이 줄어들어 고유목적 달성하기 어렵고, 대학은 교육의 질 저하로 국가적인 낭비를 초래함.(이러한 개정사항들은 학교법인 및 대학에 부담이 증가되어 결국 등록금을 인상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음)
- 행정안전부에서는 비영리법인이 95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유한 토지는 분리과세이고, 그 이후 취득한 토지는 종합, 별도합산인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과세의 형평성과 대학의 교육에 대한 공공성을 함께 고려한다면 오히려 95년 12월 31일 이후에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국가가 대학의 교육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